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71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차규근 · 신장식 · 박은정
김준형 · 강경숙 · 황운하
백선희 · 김재원 · 최혁진
서왕진 · 정춘생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의 경우 풍속·경사 등 자연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함.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 제2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2항 중 “화재의”를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 화재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 구조, <u>화재의 진화</u> ,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 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 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u> <u>순찰, 화재의</u>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